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 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 로 변경〉

■ 정부발의(의안번호 제2204008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	2
2. 인용 조문의 현행화	18
※ 참고자료	
[참고 1] 인증규제 정비방안 중 ‘제외(91개)’ 관련 현황	22
[참고 2] 연도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현황	2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 안 일 : 2024. 9. 13.
3. 회 부 일 : 2024.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직거래 농산물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명칭으로 인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오인될 수 있고 현행법에 따른 인증의 대상이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증 제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지정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제도 변경

현행법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개정은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① ----- ----- ----- ----- ----- -----.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2. <u>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u> 에 관한 사항	2. <u>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u>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	② ----- ----- ----- ----- -----

현행	개정안
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u>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u>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그 밖에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u>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u> 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u>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u> ② <u>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u>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인증의 신청 등) ① <u>인증을</u>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u>인증을</u>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1. (현행과 같음) 2. <u>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사업장의 지정</u>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장 <u>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u> 제21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등) ① ----- ----- <u>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중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사업장(이하 “농산물 직거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의 지정(이하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지정”이라 한다)</u>-----. 제22조(지정의 신청 등) ① <u>지정</u>----- ----- ----- ----- <u>지정</u>-----. ② -----

현행	개정안
는 자는 제1항에 따른 <u>인증</u>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u>인증</u>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라 <u>인증표시</u>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인증</u> 신청을 받은 때에는 <u>인증기준</u>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u>인증</u>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u>인증을 받은 자</u>(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	----- <u>지정</u>----- -----. 1. ----- <u>지정</u>----- ----- 2. ----- <u>지정표시</u>-----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③ ----- -- <u>지정 신청</u> ----- <u>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u>를 -----. ④ ----- <u>지정</u> ----- ----- -----. ⑤ ----- <u>지정을 받은 자</u>(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는 지정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 ----- -----.

현 행	개 정 안
식품부장관으로부터 <u>변경인증</u>을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에 <u>인증</u> 신청·심사·재심사 및 <u>인증</u>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u>인증의 유효기간</u>) ① <u>인증</u>의 유효기간은 <u>인증</u>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u>인증사업자</u>는 <u>인증</u>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u>인증</u>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u>인증 갱신</u>을 받아야 한다. 제24조(<u>인증의 표시</u>) ① <u>인증사업자</u>는 <u>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u>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u>인증표시</u>”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u>인증</u>을 받지 아니한 자는 <u>인증표시</u>나 이와 유사한 표시(<u>인증된 것으로</u>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u>인증표시</u>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u>인증표시</u>의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u>변경지정</u>----- -----. ⑥ ----- <u>지정</u> ----- -- <u>지정</u> ----- -----. 제23조(<u>지정의 유효기간</u>) ① <u>지정</u>----- ----- <u>지정</u>----- -----. ② <u>지정사업자</u>는 <u>지정의</u> ----- -----<u>지정</u>을 ----- ----- ----- <u>지정</u> <u>갱신</u>을 -----. 제24조(<u>지정의 표시</u>) ① <u>지정사업자</u>는 <u>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임</u>을 ----- ----- <u>지정표시</u>-----. ② <u>지정</u>을 ----- <u>지정표시</u> -----<u>지정된 것</u>----- ----- ----- -----. ③ ----- ----- <u>지정표시</u>----- -----. ④ ----- <u>지정표시</u>----- ----- -----.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인증사업자</u>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u>인증</u> 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u>인증표시</u> 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u>인증</u> 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u>지정</u> 의 취소 등) ① ----- ----- <u>지정사업자</u> ----- ----- --- <u>지정</u> 을 ----- ----- <u>지정표시</u> ----- ----- -----. --- <u>지정</u> 을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인증</u> 을 받은 경우	1. ----- <u>지정</u> -----
2. <u>인증표시</u> 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제거·사용정지 또는 변경 기간 중에 <u>인증표시</u> 를 한 경우	2. <u>지정표시</u> ----- ----- ----- <u>지정표시</u> ----- -----
3. 폐업, 업종전환 등의 사유로 해당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2항에 따른 <u>인증</u>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 <u>지정</u> ----- -----
5.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u>변경인증</u> 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5. ----- ----- ----- <u>변경지정</u> ----- -----
6.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u>인증표시</u> 를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u>인증표시</u> 를 한 자	6. ----- <u>지정표시</u> ----- --- <u>지정표시</u> -----
② 제1항에 따른 <u>인증</u> 의 취소 및 <u>인증표시</u> 의 제거·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u>지정의</u> ----- <u>지정표시</u> ----- ----- -----.

현행	개정안
제26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u> 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을 조사하거나 <u>인증사업자</u> 에게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u>지정의 사후관리</u>) ① ----- ----- <u>지정의</u> ----- ----- ----- <u>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u> ----- ----- <u>지정사업자</u> ----- -----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u>인증사업자</u>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u>지정사업자</u>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u>인증사업자</u>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③ ----- ----- <u>지정사업자</u> ----- ----- -----.
④ 그 밖에 <u>인증의 사후관리</u> 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 <u>지정</u> ----- -----.
제27조(<u>인증심사 서류 보관</u>) ① <u>인증사업자</u> 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u>인증심사</u> 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u>지정심사 서류 보관</u>) ① <u>지정사업자</u> 는 <u>지정의 유효기간</u> 등을 고려하여 ----- ----- <u>지정심사</u> -----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u>인증기관의 지정 등</u>)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인증</u> 에 필요한 인력	제28조(<u>지정기관의 지정 등</u>) ① ----- ----- <u>제21조에 따른 농산</u>

현행	개정안
과 시설을 갖춘 자를 <u>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u> (이하 “ <u>인증기관</u>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u>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업무에</u> ----- <u>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u> (이하 “ <u>지정기관</u> ”이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인증기관</u> 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u>지정기관</u>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인증기관</u>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u>인증기관</u>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u>인증기관</u> 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 <u>지정기관</u> ----- ----- <u>지정기관</u> -----. ----- <u>지정기관</u>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 -----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 -----
3. 그 밖의 사유로 <u>인증</u>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 <u>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u> -----
④ <u>인증기관</u> 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u>지정기관</u> ----- ----- -----.
제2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 ----- ----- ----- -----.
1.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1. (현행과 같음)
2.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취소	2. (현행과 같음)
3. <u>인증</u> 취소	3. <u>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u> -----

현행	개정안
4. <u>인증기관</u>의 지정 취소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홍보 4. <u>인증 및 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	4. <u>지정기관</u>-----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u>사업장의 지정</u> 5. 제23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u>우수 사업장의 지정 갱신</u> 6. 제26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u>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사후관리</u>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u>인증</u>을 받은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u>인증</u>을 받지 아니하고 <u>인증표시</u>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34조(과태료) ① 제24조제3항에 따른 <u>인증표시</u>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2조(벌칙) ----- ----- -----. 1. ----- ----- <u>지정</u>----- 2. ----- <u>지정</u>을 ----- ----- <u>지정표시</u>----- ----- 제34조(과태료) ① ----- <u>지정표시</u>-----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칙

현 행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제1항·제4항·제5항 단서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인증 재심사, 변경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4항·제5항 단서 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지정 재심사, 변경지정 또는 지정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기존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개정안에 원안 동의함.

2) 검토의견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¹⁾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서 ① 농산물 직매장, ② 농산물 직거래 장터, ③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④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의 사업장을 의미함.

2023년 기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907개소, 직거래 장터 1,336개소,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301개소가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로컬푸드 직매장 10,032억원, 직거래 장터 1,212억원,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2,157억원으로 나타남.

<2023년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유형별 현황>

직거래 유형	사업장 수	매출액
로컬푸드 직매장 ¹⁾	907개소	10,032억원
직거래 장터 ²⁾	1,336개소	1,212억원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²⁾	301개소	2,157억원

※ 주 1) 농림축산식품부, 직매장 운영실태 조사결과

2) 농림축산식품부, 직거래 추진실적 조사결과

※ 주 :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없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4. 10. 29.

1) “농산물 직거래”란 「농산물직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농산물이 직거래되는 경우, 생산자는 유통 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저렴한 값에 구매할 수 있음.

현행법²⁾은 이와 같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인증 절차, 유효기간, 인증의 표시, 인증의 취소, 사후관리, 청문, 벌칙,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농식품부는 현행법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판매면적 100m² 이상)을 대상³⁾으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40개소의 직거래사업장이 동 인증을 받아 운영 중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 개요>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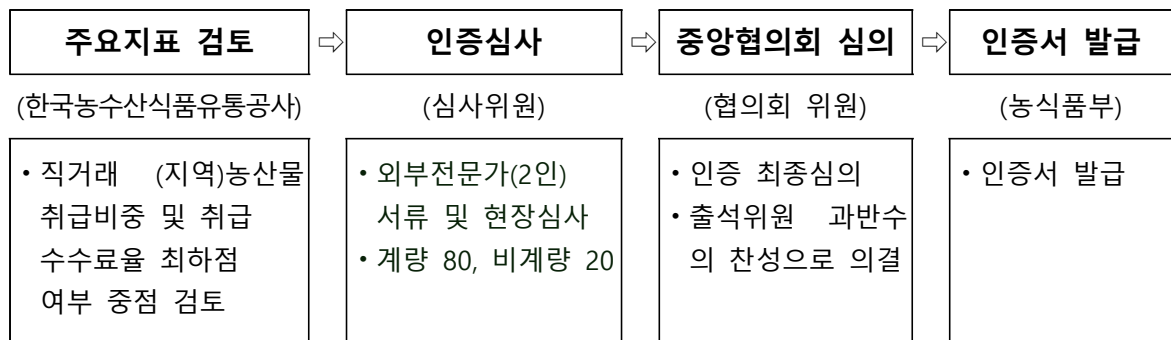
- (목적) 인증받은 직거래 사업장을 직거래 선도·확산의 핵심 주체로 육성
- (대상) 로컬푸드 직매장(직매장 판매면적 100m² 이상)
- (기준) 직거래(지역) 농산물 취급비중, 취급수수료율, 생산자관리(고령농·여성농 등 참여도), 안전성 관리, 사업장 노력도 등

2) 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3) 농식품부는 인증제도 대상 사업장 중 농산물직매장을 제외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은 인증의 필요성 부족 및 세부 인증기준 부재 등으로 인증 실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인증 대상을 직거래 장터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검토를 거친 결과, 직거래장터의 비상설 개장·판매실적 근거 자료 확보 곤란 등의 특성으로 인해 세부 인증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의견임

○ (추진절차)



□ 인센티브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 사용



- 정책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장 홍보·마케팅비 비용 등 지원
- 매장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광고, 시식·이벤트행사 사은품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4. 10. 25.

개정안은 ① 현행법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② 농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을 ‘인증’이 아닌 ‘지정’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하여 다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소비자 또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운영

자 등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임. 동 제도는 우수한 운영체계를 갖춘 ‘직거래 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임에도 품질이 좋은 ‘우수 농산물’을 거래하는 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로 오인될 여지가 있기 때문임⁴⁾.

개정안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여 동 제도의 운영에 따른 일반 국민 등의 혼란을 경감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둘째, ②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동 제도의 실질이 인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임.

인증(certification)은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공적으로 확인·증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기준을 마련해 놓고, 전문성을 가진 제3자인 인증기관이 적합여부를 심사·평가하는 제도임. 즉, 제품·서비스가 아닌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은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아닌 ‘기업(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증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반면, 지정은 ① 기존 인허가나 특허로서의 지정, ② 행정업무의 부

4) 이와 관련하여 제488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인증제도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결과 정비 대상(명칭변경) 과제로 결정된 바 있음(2021. 12.)

여를 위한 지정, ③ 지원·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 ④ 규제 대상 선정 지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개념임.

현행법에 따른 동 제도는 우수한 운영체계를 갖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지원·육성 대상으로 선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질은 지정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인증과 지정 간 비교>

구 분	인증	지정
내용	공적기관에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공정 등을 심사한 후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증명하는 것 (의무적 인증과 임의적 인증으로 분류)	① 기존 인허가나 특허로서의 지정 ②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 ③ 지원·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 ④ 규제 대상 선정 지정
대상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공정 등(사람·기업 등 불가)	다양하게 사용(사람·기업 등 가능)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4. 10. 25.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현행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인증’이라는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024. 2. 27.)에서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안건 심의 결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의결한 바 있음.

<개정안 관련 인증 규제 정비 방안⁵⁾>

명칭	구분	정비방안	조치사항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임의	인증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 인증제 도(표준-심사-확인)요건도 미비하므 로 지정 제도로 전환	농산물직거래법 개정

※ 자료 :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2024. 2. 27.

5) 인증 규제 정비 방안 중 ‘인증 제외(91개) 방안’ 전체 내용은 [참고 1] 자료 참고

2. 인용 조문의 현행화

현행은 ‘농산물’의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으로, ‘농업인’의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산물’의 정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으로, ‘농업인’의 정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 “농업인”이란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4. -----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2호에 따른 -----.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6. “생산자단체”란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4호-----.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7. (현행과 같음)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현행과 같음)
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현행과 같음)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개정안은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함.

2) 검토의견

2015년 6월 22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2015년 12월 23일 시행)되면서, 타법개정을 통해 종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하였음.

또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수산업·어촌 분야를 규율하게 되면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내용 중 수산업·어촌 정책 분야에 관한 내용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개정안 관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타법개정 사항>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제 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산물 정의	<제3조제6호가목>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제6호가목>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농업인 정의	<제3조제2호가목>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3조제2호>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생산자 단체	<제3조제4호>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4호>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에 2015년 12월 23일부터 농업·농촌 정책 위주로 규율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들을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규정으로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

참고 1

인증규제 정비방안 중 '제외(91개)' 관련 현황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정비방안	조치사항	완료시한
1	고용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의무	서류심사를 통한 지정제도로 전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4 下
2	고용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임의	인증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 인증제도(표준·심사·확인)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선정 제도로 전환	직업안정법 개정 (23.12월 국회제출)	'24 下
3	고용부	사회적기업	임의	인증제도는 폐지하고 서류 심사 등을 통한 등록제로 전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25 下
4	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 인증제도(표준·심사·확인)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정 제도로 전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하위법령 개정	'24 下
5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임의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인증제도에서 제외	-	완료
6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	임의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적 제도로 인증제도에서 제외하고 지정 등으로 전환	소비자기본법 개정	'24 下
7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임의	민간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인증에서 제외	-	완료
8	교육부 (고용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임의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인적자원개발 목적에 맞게 인사관리 하는 제도로 전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개정	'24 下
9	국토부	건축설비 신기술 인정	임의	신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로서 인증 요건에 부적합 하므로 등록·지정 등으로 전환	-	완료
10	국토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의무	건축 자재 등 품질인정제도는 규제정책인 인증제도 보다는 법령상 명시된 인정 또는 확인제도로 전환	-	완료
11	국토부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임의	신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로서 인증 요건에 부적합 하므로 등록·지정 등으로 전환	-	완료
12	국토부	바다중격음 성능 등급 인정	의무	바다중격음 성능등급 인정 제도는 규제정책인 인증제도 보다는 법령상 명시된 인정제도로 운영	주택법 개정	'24 下
13	국토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의무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성능기준을 인정 하는 것으로 규제 정책인 인증보다 인정제도로 운용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대한규정, 관련규칙 고시개정	'24 下
14	국토부	소화물배출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	임의	인증 대상이 사업자이며 국가·국제 표준이 없는 등 인증제도에 부적합하므로 명칭 전환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	'25 下
15	국토부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임의	도시와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권장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 취지에 부합하므로 자율적인 지정제도로 전환	스마트도시법 개정	'25 下
16	국토부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임의	국가 및 국제표준이 없고 인증 대상이 표준기본법에서 정하는 제품 등에 적합하지 않아 타 제도로 전환	물류시설법 개정	'25 下
17	국토부	건축신기술 지정제도	임의	신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로서 인증 요건에 부적합 하므로 등록·지정 등으로 전환	-	완료
18	국토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임의	인증대상이 사업자이며 우수성을 부여하는 것은 인증제도에 부적합하므로 타 제도로 운영 필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24 下
19	국토부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임의	적합성 평가 항목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등 인증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명칭 전환	철도사업법 개정	'25 下
20	국토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임의	인증대상이 기업이며 우수성을 부여하는 것은 인증제도에 부적합하므로 타 제도로 운영 필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24 下
21	국토부	우수물류 신기술	임의	신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로서 인증 요건에 부적합 하므로 등록·지정 등으로 전환	-	완료
22	국토부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	주택 인증은 인증에 부적합하며 설계도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 로서 지정 또는 등록 제도로 전환	주택법 개정	'24 下
23	국토부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	임의	인증 대상이 공장(사업장)으로 인증제도에 부적합하므로 지정 제도로 전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24 下
24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임의	인증 대상이 우수기관(사업장)으로 인증제도에 부적합하므로 지정 제도로 전환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	'25 下
25	가상청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임의	인증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 인증제도(표준·심사·확인)요건도 미비하므로 승인 제도로 전환	-	완료
26	가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의 관측 장비 검증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 인증제도(표준·심사·확인)요건도 미비하므로 검증 제도로 운영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4 下
27	농식품부	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인증	임의	현행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등록/표시 제도로 전환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24. 下
28	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임의	신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로서 인증 요건에 부적합 하므로 등록·지정 등으로 전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 성법	'24 上
29	농식품부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	임의	해당 지역의 기후·토양·토질 생산환경 역사, 명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인증에 부적합	-	완료
30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	임의	인증제도에 부적합하며 진흥목적의 제도로서 지정 제도로 전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법	'24 下
31	농식품부	식품명인	임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지정/선정 등의 제도로 전환	-	완료
32	농식품부	신기술농업기계지정	임의	이미 지정제도로 운영 중	-	완료
33	농식품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임의	인증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 인증제도(표준·심사·확인)요건도 미비하므로 지정 제도로 전환	농산물직거래법 개정	'24 下
34	문화부	문화예술후원매개 단체의 인증	임의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기업을 연결해 주는 단체에 혜택을 부여 하는 제도로 지정 등의 제도로 전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24 下
35	문화부	문화예술후원우수 기관의 인증	임의	예술후원을 하는 기업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 제도가 아닌 지정 등의 제도로 전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24 下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정비방안	조치사항	완료시한
36	문체부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임의	국민의 체력관리 및 측정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제도로 인증제도에 부적합하므로 제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4 下
37	문체부	우수문화상품 지정	임의	이미 지정제도로 운용 중	-	완료
38	문화재청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임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정 등의 제도로 전환	문화재보호법 개정	'24 下
39	문화재청	전승공예품 인증	임의	전통기술의 지속적 유산계승과 전승 활성화 제도로써 지정 등의 제도로 전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4 下
40	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임의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예우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평가항목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전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4 下
41	복지부	건강강화기업 인증	임의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직장내 건강친화적 환경조성에 적합한 등록 및 지정제 등으로 전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4 下
42	복지부	고령친화 우수제품	임의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우수성을 지정하는 진흥제도로 운영	-	완료
43	복지부	신기술인증(NET마크)	임의	신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로써 인증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등록 지정 등으로 전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	'24 上
44	복지부	어린이집평가인증	의무	'18년 이후 인증제를 폐지하고 평가로 이미 전환하였는바 인증 제도에서 제외	-	완료
45	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인증	임의	외국인 환자 대상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절차로 등록 및 지정제 등으로 전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4 下
46	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의 평가 및 인증	의무	검사 대상자와 개인정보의 보호 방안 등 해당 기관의 검사 역량에 대한 평가 사항으로 타 제도로 전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24 下
47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임의	국내 의료기관의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평가 및 인정제도를 통해 정책 목적 달성	의료법 개정	'24 下
48	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의무	대상 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재의 확인 명칭 사용	-	완료
49	복지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임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은 정해진 기준의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로서 현재의 지정 명칭 사용	-	완료
50	복지부	혁신형의료기기군 지정	임의	의료환경 진입여부, 혁신의료기기군별 우수성 평가 및 우선심사 등의 허가 특례 지원 제도로써 현재의 지정 명칭 사용	-	완료
51	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임의	특례를 지원에 필요한 의료기기 기업의 진흥제도로써 인증에 부적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	'24 下
52	복지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임의	특례를 지원에 필요한 제약기업의 진흥제도로써 인증에 부적합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24 下
53	산림청	목재제품신기술지정	임의	신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로써 인증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등록 지정 등으로 전환	-	완료
54	산림청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의무	목재제품 중 비건축자재의 경우, 품질 요구사항을 의무적으로 검사할 필요성이 낮은 등 본래의 표시제도로 운영	-	완료
55	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임의	인증 대상에 부적합하므로 등록 또는 지정제도로 전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 개정	'24 下
56	산림청	석재산업 우수사업자 인증	임의	인증 대상에 부적합하므로 등록 또는 지정제도로 전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규정 개정	'25 上
57	산림청	전통 석재제품 인증	임의	'전승공예품 인증(문화재청)'과 '우수공예품 지정(문체부)' 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검토 등록 또는 지정 제도로 전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5 上
58	산업부	녹색인증	임의	다양한 기술에 대한 녹색 기술에 해당 여부를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인바 지정제도 등으로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하위법령개정	'24 下
59	산업부	신기술인증(NET마크)	임의	신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로써 인증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등록 지정 등으로 전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하위법령개정	'24 上
60	산업부	신제품인증(NEP마크)	임의	신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로써 인증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등록 지정 등으로 전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	'24. 上
61	소방청	탱크안전성능검사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 인증제도(표준·심사·확인)요건도 미비하므로 본래 명칭인 검사제도로 운용	-	완료
62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	의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고 사용 가능 여부를 인정하는 제도로써 인증제도에 부적합	-	완료
63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의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안전한 의료기기를 허가하기 위해 세부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인증제도에 부적합	-	완료
64	식약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임의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특례지원은 인증제도에 부적합하므로 지정제로 전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	'25 下
65	여가부	가족친화인증제도	임의	일·가족 양립 실현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을 촉진하는 제도로써 등록 등으로 전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4 下
66	중기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	임의	인증체계에 갖추지 않아 인증제도에 부적합하여 지정/등록제로 전환	-	완료
67	중기부	벤처기업 확인	임의	인증체계를 갖추지 않아 인증제도에 부적합하며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지정제로 전환	-	완료
68	중기부	성능인증	임의	인증체계를 갖추지 않아 인증제도에 부적합하며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확인제로 전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24 下
69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인증	임의	법정 인증체계를 갖추지 않음. 다만, 중소기업의 지식재산(특허 등) 경영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적 가치를 고려하여 등록 또는 지정제로 전환	발명진흥법, 및 하위법령 개정	'24. 下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정비방안	조치사항	완료시한
70	해수부	갯벌생태관광 인증	임의	갯벌 관리구역 지정, 청정갯벌 지정, 갯벌 생태마을 지정과 같이 지정으로 전환	갯벌 관리와 복원법 개정	'25. 下
71	해수부	관상어양식 우수사업자 인증	임의	인증 대상이 아닌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지정/등록하는 방식으로 전환	관상어산업 육성지원법 개정	'24 下
72	해수부	수산물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	임의	현행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등록/표시 제도로 전환	수산물식품산업육성지원법 개정	'25 下
73	해수부	수산물 지리적표시	임의	인증제도에서 제외하며 등록제도로 전환 (해수부에서 현재 등록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	완료
74	해수부	수산물품질인	임의	인증제도에서 제외하며 지정제도로 전환 (해수부에서 현재 지정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	완료
75	해수부	우수 전화주기업의 인증	임의	우수한 전화주 기업을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인증보다는 지정제도로 전환	해운법 제47조 개정	'24 下
76	해수부	우수천일염 인증	임의	이미 소금 품질검사제도가 있으므로 우수 천일염은 지정 제도로 전환	소금산업진흥법 제39조 개정	'25 下
77	해수부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임의	인증의 대상으로 부적합하여 등록/지정제도로 전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법률 개정	'25 上
78	해수부	해양수산신기술	임의	신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로서 인증 요건에 부적합 하므로 등록, 지정 등으로 전환	해양수산과학기술육 성법	'25 上
79	해수부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임의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등록/지정/인증 등으로 전환	해양치유사업의 관리 및 활용 법	'25 上
80	행안부	기업재난관리자 인증	임의	재난 발생 대비 기업이 경영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기업재난 관리 교육후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자격제도로 전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4 下
81	행안부	방재전문인력 인증	임의	방재안전대책 업무수행 인력 교육 후, 평가시험 합격자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자격제도가 적합	-	완료
82	행안부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제도(중전 방재 신기술)	임의	신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로서 인증 요건에 부적합 하므로 등록, 지정 등으로 전환	-	완료
83	행안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임의	시설물의 지진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현행 인증제를 확인 제도 전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25 下
84	환경부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	임의	현재 지정제도로 운영 중	-	완료
85	환경부	소음도 검사	의무	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검사제도 운영	-	완료
86	환경부	신기술인증기술검증(N ET마크)	임의	신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로서 인증 요건에 부적합 하므로 등록, 지정 등으로 전환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 지원법 개정	'24 上
87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임의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실내 공기질 유지시설의 지정 제도로 전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24 下
88	환경부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등급	의무	환경부 "고사"제도로 시행 중	-	완료
89	환경부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의무	정기 검사제도로 법령 용어와 같이 운영(기초차)	-	완료
90	환경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임의	인증 주요 부속의 원인 분석과 해소방안 인증 취득에 따른 지 원방안 고려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제도로 전환	자원재활용법 개정 (안) 마련	'24 下
91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임의	"자랑" 제도로 기 전환 완료('18.12월)	-	완료

※ 자료 :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2024. 2. 27.

참고 2

연도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현황

신규 인증년도	No	구분	사업장명	인증기간
2017 (9개소)	1	직매장	나주로컬푸드 직매장	'24.5.17 ~'26.5.16 * '24년 재인증 완료
	2	직매장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3	직매장	문양역 로컬푸드 직매장	
	4	직매장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	
	5	직매장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모악점	
	6	직매장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삼천점	
	7	직매장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하가점	
	8	직매장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효자점	
	9	직매장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2018 (8개소)	1	직매장	김포농협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23.4.25 ~'25.4.24 * '23년 재인증 완료
	2	직매장	순천로컬푸드 순천만 국가정원점	
	3	직매장	완주로컬푸드 직매장 둔산점	
	4	직매장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5	직매장	전북 삼락 로컬마켓	
	6	직매장	전주푸드 송천점	
	7	직매장	포천로컬푸드 파머스 마켓	
	8	직매장	협동조합 농부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2019 (6개소)	1	직매장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 아름점	'24.5.17 ~'26.5.16 * '24년 재인증 완료
	2	직매장	김포로컬푸드공동판매장 현대아울렛점	
	3	직매장	순천로컬푸드직매장 조례호수공원점	
	4	직매장	옥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5	직매장	경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6	직매장	청양로컬푸드 직매장	
2020 (3개소)	1	직매장	화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23.4.25 ~'25.4.24 * '23년 재인증 완료
	2	직매장	고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3	직매장	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인증년도	No	구분	사업장명	인증기간
2021 (8개소)	1	직매장	화성 로컬푸드 직매장 금곡점	'24.5.17 ~'26.5.16 * '24년 재인증 완료
	2	직매장	화성 로컬푸드 직매장 능동점	
	3	직매장	화성 로컬푸드 직매장 동탄호수공원점	
	4	직매장	화성 로컬푸드 직매장 동탄중앙점	
	5	직매장	화성 로컬푸드 직매장 동화점	
	6	직매장	화성 로컬푸드 직매장 봉담점	
	7	직매장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	
	8	직매장	서청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2022 (1개소)	1	직매장	포항산림조합 로컬푸드직매장	'23.4.25 ~'25.4.24
2023 (5개소)	1	직매장	안산시 로컬푸드직매장	'24.5.17 ~'26.5.16
	2	직매장	평택로컬푸드직매장 오성점	
	3	직매장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4	직매장	군산로컬푸드직매장	
	5	직매장	순천로컬푸드직매장 신대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4. 10. 25.